

5.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中 改正令

財務部令 第1,983號 1994. 6. 15
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40조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0항
내지 제12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9항을
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 제11항(종전
의 제10항)중 “제9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한
다.

⑨영 제75조 제9항에서 “재무부령이 정
하는 금융기관”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
령 제37조의2 제1호·제3호·제4호 및
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금융기관
을 말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개인연금저축의 법위등) ①
법 제80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“재무
부령이 정하는 사유”라 함은 다음 각
호의 사유를 말한다.

1. 천재·지변
2.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
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·폐업
3.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

업

4.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
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
생

②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
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“재무부령이
정하는 보험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
건을 갖춘 보험(체신예금·보험에 관한
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
법·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
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
한다)을 말한다.

1.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
만 20세이상일 것.
2.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 불입기
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
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.
3.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
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
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
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.

③ 영 제75조의2 제3항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”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9호의2 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영 제75조의2 제4항에서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”는 별지 제29호의3 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

다.

[별지 제29호의2 서식] 및 [별지 제29호의3 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이유 □

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신설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 □

- 가.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을 추가함(제40조제9항).
- 나.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월이상의 입원치료·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을 정함(제40조의2 제1항).
- 다.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20세이상이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함(제40조의2 제2항).
 〈재무부 제공〉